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746 호, 제 747 호
- 다. 제출일자 : 2019. 5. 31.
- 라. 회부일자 : 2019. 6. 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8	2,225	2,225	5,122	4,591	531	22	509	89.6
2017	2,287	2,287	2,955	2,888	67	0	67	97.7
2016	2,647	2,647	3,049	2,992	57	0	57	98.1

- 세입예산현액은 22억 25백만원이었으나 실제 51억 22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45억 91백만원을 수납하고, 5억 31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5억 31백만원 중 2천 2백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5억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9.6% 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체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8	55,076	245					4,512	59,833	59,605	0	228 (0.4%)
2017	6,373	0	0	0	0	0	227	6,600	5,995	245	359 (5.4%)
2016	6,154	0	0	0	0	0	71,888	78,042	77,615	0	427 (0.5%)

- 당초 예산액 550억 76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45백만원, 예비비 45억 1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98억 33백만중 99.6%인 596억 5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2억 2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없음.
- 예산의 이체
 -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민선7기 조직개편(2018.11.1.) 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의 4억 14백만원(3건)이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로 이체됨.
- 예산의 변경사용은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2건에 45억 12백만원으로
 - 동북선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취소 손해배상 판결금
: 26억 92백만원
 - 9호선 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 청구 소송판결금
: 18억 2천만원

5)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없음.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억 2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응 율 (%)	비 고
2018	59,833	228	0.4	
2017	6,600	359	5.4	
2016	78,042	427	0.5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2억 28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2018	2,225	2,225	5,122	4,591	531	22	509	89.6
2017	2,287	2,287	2,955	2,888	67	0	67	97.7
2016	2,647	2,647	3,049	2,992	57	0	57	98.1

가) 개 요

- 세입예산현액은 22억 25백만원이었으나 실제 51억 22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45억 91백만원을 수납하고, 5억 31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5억 31백만원 중 2천 2백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5억 9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9.6%로,
- 당해연도 수납율은 전년(97.7%) 대비 감소(8.1%p↓)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수납율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나) 세수추계 (결산서 p.13)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경우 51억 22백만원은 예산현액 22억 25백만원의 230.2%에 해당하며, 28억 97백만원의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337	378	378	41	○세입세출외 현금발생이자 -우이천하천정비공사 2억 1천만원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 1억 6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위약금	13	3,640	3,468	3,627	○중량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12차)공사:34억 44백만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기계설비공사 :1천 6백만원 ○서울소방행정타운건립공사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 8백만원
불용품매각대	0	8	8	8	관용차량 2대 매각대금 : 8백만원
그외수입	1,868	1,027	737	-841	○서울소방행정타운건립 전기공사 선수금 및 계약보증금 등 3건: 3억 99백만원 ○강남역 주변 역경사관로 개선공사 지장물 이설비 환수금 및 고객부담 환불금 등 2건:1억 27백만원 ○서울혁신파크 1단계조성공사 보험금 정산환불금 이설공사비 정산 환수금 등 2건 : 5백만원 ○여의도 지하병커 개선공사관련 공사 영수증관 이설공사 정산금 2건 : 5천 3백만원 ○서울창업허브별관 리모델링 태양광 발전장치 선지급금 정산환수금 : 6천 2백만원 ○서울지방조달청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 3건 : 2천 8백만원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 계약보증금 및 고객시설부담금 환불금 등 2건 : 1천만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장물이설공사 정산환불금 :2천 3백만원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등 계약보증금 및 선금이자 환불 : 9백만원 ○초안산 보행교량 지장물이설공사 정산환불금 등 16건 2천 1백만원
지난년도수입	7	69	0	62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가 4천 1백만원인데,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 외에 위탁공사비 보관금 및 공사 기성금과 같은 현금을 예탁 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의 이자수입으로,
 - 최근 5년간(’12년~’16년) 정기예금 평균잔액(80억 49백만원)과 공공예금 평균잔액(101억 71백만원)에 이자율(1.85%)을 반영하여 당초 3억 37백만원으로 세입추계 하였는데([표 2] 참조),

[표 2] 기타이자수입의 최근 5년간 평균잔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12년 ~ ’1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평균
소계		18,310	18,414	21,283	22,204	19,547	18,220
평균잔액	정기예금	1,249	739	15,867	16,277	6,116	8,049
	공공예금	17,061	17,675	5,416	5,927	4,775	10,171
※세수추계 산출근거 : 18,220백만원*1.85%=337백만원							

- 이는 세입이 일정치 않아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평균으로 편성 하였던 것이나, 예상과 달리 우이천 하천 정비공사 사업,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등에 대한 부담금 보관 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3억 78백만원이 징수결정된 상황으로, 추후에는 사전에 이자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최근 5년간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세입예산 추계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차년도 공사비 보

관금 규모를 조사·예측하고 이자율을 반영함으로써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위약금’은 지체상금 물량 및 가격의 추정이 어려워 최근 5년간(’12년~’16년) 실적의 평균액을 계상하였으나, 7건의 지체상금 34억 68백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1천 3백만원)대비 26,677% 초과 징수된 사항으로, 예산편성 전 준공기한 초과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사전에 조사한 후 그 예측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또한, 적극적인 지체상금 부과는 불성실 시공사들에게 경고메시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 여겨지나, 지체상금 전수 및 액수가 이처럼 과다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바 공사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2017년도 징수율 15.9%(전체 체납액 5천 7백만원 대비 17년도 징수액 9백만원 = 징수율 15.9%)를 반영하여 7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체납자의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장기체납액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초기체납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가능한 초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원년에 체납 예방을 위한 납부권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은 사무용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 결정한 물품에 대한 매각 수입인데, ‘18년도의 경우 불용품 매각계획이 없어 편성을 하지 않았으나, 계획에 없던 노후 차량을 매각함에 따라 8백만원의 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 노후차량 매각의 경우 내구연한에 따라 매각예상이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측치 못한 것은 세수추계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불용될 물품을 사전에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계획에 따라 처분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미수납액 (결산서 p.13)

[표 3]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예 산 과 목	건수	미수납액	사 유
계	22	531	
지난년도 수입			
<다음연도 이월액> ◦ 지체상금 1건 1억 73백만원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 그외수입 17건 3억 36백만원 - 공사비 과지급 환수금 6건 2억 96백만원 .응봉교 재설치사업 간접노무비등 승율비 초과 지급 환수금 .서울창업허브리모델링공사비 과다지급 환수금 2건 .서울시어린이병원 증축공사 노무비 환수금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도시가스 맨홀정비 공사비 환수금 .홍은예술창작센터 전기공사 과다지급금 환수금 - 소송비용 회수금 11건 4천만원	22	531	◦ 고질적 체납 -11건/3천 8백만원 ◦ 재산압류 중 -5건/4억 28백만원 ◦ 납부완료 -2건/4천 3백만원 ◦ 결손 처분 -4건/2천 2백만원

- 금회 미수납액은 공사비 과지급 환수금 등 총 22건에 5억 31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건별 사유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이중 재산압류 중이 5건에 4억 28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미수납액 중 재산압류 세부내역

(단위: 원)

과세년월	목		세부내역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초과 미수납사유	미수납액 확보방안	비고
			합계	428,267,540			
2018-06	지체상금	누비종합건설 (주) 대표 전상열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172,776,720	경영악화로 인한 지연배상금 발생	압류	
2018-02	그외수입 (기타잡 수입)	한신공영(주)	응봉교 재설치사업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 초과지급 환수금	246,702,000	계약심사과 및 발주처와 협의후 변경한 건으로 감사처분요구 불이행으로 미납부	압류	
2016-08	그외수입 (소송비용)	김대수	선사로~고덕지구간도로 확장공사구간내명도소송 비용(2015가단112017)	5,775,120	고질적체납	압류	
2012-09	그외수입 (기타잡 수입)	서호산업개발 (서호전기)	홍은예술창작센터 전기공사 과지급금 환수	1,273,500	경영악화로 징수의 어려움이 있음	압류	
2016-12	그외수입 (기타잡 수입)	코원에너지 서비스(주)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도시가스 맨홀정비 공사비 환수	1,740,200	고질적 체납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있음	압류	2019.5.27 압류해지, 5.23납부

-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의 경우 매 결산 심사 시 고질적 체납이 시효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매년 이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특히, 초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변경사용	전용	이체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불용율)
2018	55,076	245	0	0	414	0	4,512	59,833	59,605	0	228 (0.4%)
2017	6,373	0	0	0	0	0	227	6,600	5,995	245	359 (5.4%)
2016	6,154	0	0	0	0	0	71,888	78,042	77,615	0	427 (0.5%)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550억 76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2억 45백만원, 예비비 45억 12백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598억 33백만원이며, 이 중 99.6%인 596억 5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2억 2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19~20)

- 금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2억 28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5%p 감소(5.4%→0.4%) 하였음.

[표 5]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액)	불용율 (%)	불용사유
일반회계	59,833	59,605	-	228	0.4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운영	13	13	-	-	0	
효율적인 청사관리	4,124	4,077	-	47	1.1	- 전산용품, 소모품 구입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28	224	-	4	1.8	- 위원점검수당 집행잔액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21	11	-	10	47.6	-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강우에 따른 비 상발령을 감안하여 예산편성했으나, 실 제 비상근무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One-PMIS)유지관리	488	465	-	23	4.7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낙찰 차액
건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682	615	-	67	9.8	-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및 계약심사 결과 반영 및 낙찰차액 (67백만원)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손해배상 판결금	2,692	2,692	-	0	0	
9호선 2단계 915공 구 공사 대금 청구소 송 판결금	1,820	1,820	-	-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별회계 진출금	48,990	48,990	-	0	0	
기본경비	775	698	-	77	9.9	- 경상적 경비로 집행잔액

- 먼저,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사업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건설공사장의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및 제설대책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와 주변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사업으로,

[표 6] 2018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의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8예산편성	2018예산집행	잔액	집행액 세부내역
계	21,280	11,103	10,177	
풍수해대책 상황실운영 급량비	8,800	3,664	감 5,136	풍수해(보강 24회, 1단계 9회, 2단계 2회)
제설대책 상황실운영 급량비	8,480	2,482	감 5,998	제설(보강 11회, 1단계 3회, 2단계 1회)근 무자 급량비 지급
풍수해 책자 제작비	2,500	1,080	감 1,420	풍수해대책 책자 제작 200부
상황실 운영 및 각종 비품구입비	1,500	3,877	증 2,377	토너 등

<예산편성 기준>

- 재난안전(풍수해,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급량비 : 17,280천원
 - 풍수해 급량비 : 1,100인×1식×8,000원 = 8,800천원
 - 제설 급량비 : 1,060인×1식×8,000원 = 8,480천원
- 수방책자 및 상황실운영 : 4,000천원
 - 수방책자 (250부×10,000=2,500천원)
 - 상황실 운영 각종 비품 구입비 (1,500천원)

- 금회 예산현액 2천 1백만원 대비 47.6%인 1천만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사유는 당해연도에 극한 기상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이 감소한 것(집행잔액([표 5] 참조))이 주된 원인임.

- 다음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건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들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각각 4천 7백만원, 4백만원, 2천 3백만원, 6천 7백만원으로, 그 사유는 집행잔액 및 용역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하겠음.

다)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결산서 p.23~26)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은 없음.

○ 예산이체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에서 총 3건 4억 14백만원이 안전총괄실(前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로 이체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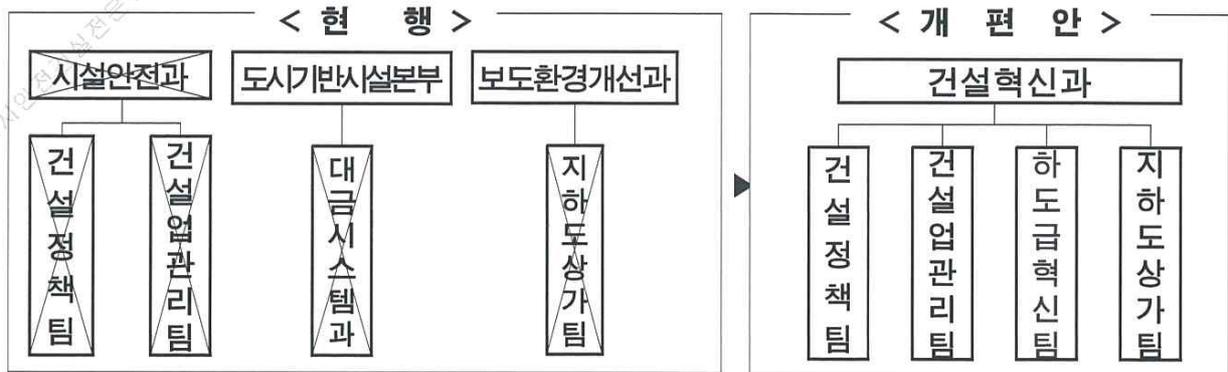
[표 7] 일반회계 예산이체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2건				414	414	414		
1	도기본 총무부 홍보예산과	하도급대금지급 확 인시스템(대금바 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5	45		2018-11- 07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8.11.1. 시행)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하도급대금지급 확 인시스템(대금바 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5		
2	도기본 총무부 홍보예산과	하도급대금지급 확 인시스템(대금바 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47	347		2018-11- 07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8.11.1. 시행)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하도급대금지급 확 인시스템(대금바 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47		
2	도기본 총무부 홍보예산과	하도급대금지급 확 인시스템(대금바 로)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22	22		2018-11- 07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8.11.1. 시행)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하도급대금지급 확 인시스템(대금바 로)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22		

- 이는 민선7기 조직개편(2018.11.1.) 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건설분야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건설분야 업무 전반을 총괄 추진하는 과(課)단위 조직인 건설혁신과를 신설하고,

- 그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를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으로 이관([그림] 참조)하게 되면서 해당 부서 예산 4억 14백만원을 모두 이체하게 된 것임.



[그림] 2018.11.1.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총괄실 조직운영계획 중 건설혁신과 신설 계획

- 이는 하도급혁신팀이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와 기존 건설정책팀의 하도급 관련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됨.

라) 예비비 지출(결산서 p.29)

- 예비비 사용은 2건 45억 12백만원으로 배상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한 것임.

[표 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내역	금액	비고
	합계	4,512	
1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판결금	2,692	
2	9호선 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1,820	

-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판결금’은 서울시가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남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2015년 12월 사업수행능력 미충족(2015년 4월 (주)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향후 사업추진 불투명 등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였는데,
 - 이에 경남기업 컨소시엄은 2016년 9월 사업 준비비용 및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2018.8.29.) 결과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제안공고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가 판결금 26억 92백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 것임.
 -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남기업이 2015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2015년 6월 ‘9호선 2단계 915공구’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바 있어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의 조치는 불가피하였다고 사료되나,
 -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정 능력에 미달되는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과학적이고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실기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 이처럼 사전 검증 부실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금의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서울시 차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증절차 마련이 필요해 보임.

- '9호선 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은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도급자인 (주)경남기업이 2015년 4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2015년 6월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 이에 서울시는 (주)경남기업에 대한 서울시 채권(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915공구 공사대금 35억 67백만원 및 (주)경남기업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하고 있었던 916공구 공사대금 29억 87백만원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²⁾에 의거 상계 및 유보 처리하였으나,

-
- 1) 제144조(상계권)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 2)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경남기업이 2017년 12월 서울시가 미지급한 공사대금(65억 54백만원)에 대해 지급요청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2018.10.12.) 결과 (주)경남기업이 일부승소³⁾함에 따라 판결금 53억 7백만원을 잔여 예치금 34억 87백만원(경남기업 9차 공사대금)과 예비비 18억 2천만원을 사용하여 지급한 것임.
 - 서울시는 판결금에 대한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지급하였고, 향후 서울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 상기 예비비 사용 2건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회계 구분이 명확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타 회계 예비비를 사용한 이 같은 사례는 회계 구분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회계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것임.

⑤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판결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 가.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4,376,906,579원 및 그중 1,166,606,579원에 대하여 2016.2.4.부터 2018.10.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구호에게 154,409,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4.부터 2018.10.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 가.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7/10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각 부담하고,
- 나. 원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구호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구호가, 2/5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각 부담하며,
- 다.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원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구호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구호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마) 차년도 사고이월 (결산서 p.19~20)

○ 차년도 사고이월 없음.

[붙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추진현황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61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미흡	<p>준공 완료된 건설중인 자산을 회계처리 하지 않더라도 유형 자산의 각 계정의 변화가 발생될 뿐 재무제표 총계액은 변화가 없음.</p> <p>그러나,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결산의 기능에 대해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이라고 되어 있음.</p> <p>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및 신뢰성 제고와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정확한 회계처리가 선행되어야 함.</p> <p>서울시는 준공완료된 자산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하지 말고 각 유형자산에 맞게 회계처리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p>	<p>▶ 완료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 확장 공사> ○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e-호조 시스템상 2019. 1.7.이전 공사완공대체조서 작성 완료하여 '19. 6.3 최종 회계처리 완료</p> <p><겸재교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2차)> ○ “겸재교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17.1.31. 최종 준공되어 e호조상에 준공된 자산으로 기등록되어 있으나, 총 8차의 차수계약 중 '11.2.10.준공된 2차 분이 누락되어 '19.5.27 최종 회계처리 완료되었음.</p> <p><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70량 구매> ○ '19. 5. 15.: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70량 관련 자산취득 보고(2019.5.14.)처리 완료되었음. (도철설비부⇒자산관리과)</p>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도시 철도설비부)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63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정경쟁 침해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입안하는 것은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유찰 등의 합당한 경우로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p>▶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시 공정경쟁에 저해되지 않도록 공개입찰을 우선시 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축부)
66	발주공사 관련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권고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건은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삼중으로 계약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에 실패한 경우로서 관례적인 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보증하는 (일반)계약이행보증서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고 있음. 다만,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등의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고 있음.	<p>▶ 추진중</p> <p>□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보증약관에 지체상금약정액은 보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9.1. 지체상금 중 일부 (79,355천원)를 납부하였으며 '17.11.29. 타절준공 후 2차에 걸쳐 지연배상금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납부를 하지 않음. 공사대금 관련하여 서울시와 소송중임. ○ '19.5.14. 체납자 소유의 토지(382㎡)를 압류함. <p>□ 향후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납부 촉구 및 강제징수 방안 강구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축부)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p>발주기관은 하도급 직불합의서가 제출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도록하여 지체상금 등 계약상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고함.</p> <p>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간접노무비 환수건은 지방계약법의 해석문제와는 무관하고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변경 계약시 간접노무비 등의 승율비용 적용 및 공사대금산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건설공사 분쟁 성격임. 게다가 계약상대자는 환수금 납부추구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검토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수납액 환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함</p>	<p>▶ 추진중</p>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3.23.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통보 후 4차에 걸쳐 환수금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계약 당사자가 납부를 계속 거부하고 있음. ○ 감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금액 : 246,702천원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으로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최초계약 12.457%에서 준공시 30.09%로 간접노무비의 승율비용이 과다 계상·지급되어 환수 조치 <p>□ 향후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의견에 따라 '19.6월 중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임 	<p>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p>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67	장기계속공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업무 절차 개선	<p>장기계속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총사업비 관리를 위해서는 발주의뢰부서와 발주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p> <p>첫째, 국가 총사업비관리제도에 준해 발주기관 내 장기계속공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을 가시적으로 구축하고 사업계획 초기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는 사업과정 전체를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사업단계별 발주의뢰부서 또는 운영사용자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금액 감·증액과 관련 포인트 또는 페널티제도를 검토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p> <p>둘째,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심사 또는 계약심사 절차 운영시 설계변경요구주체별, 설계변경사유별 계약금액 증액분 구분경리방법을 검토하여 총사업비 증액변경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총사업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개선을 권고함.</p> <p>셋째, 공사시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공정 및 공법을 분석하고 공사민원발생 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하는 등 안전·민원 관련 이슈를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민원에 따른 설</p>	<p>▶ 추진중</p> <p>□ 유형별 설계변경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설계 시 예측하지 못한 토질 변화· 지하매설물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개선 필요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 예산 투입지연으로 인한 공사 장기화·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 설계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 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p>□ 문제점 및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단계 및 기본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효과가 저조하나, 공사 착공 이후 지하차도 연장 설치,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요구 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추가 공사비 발생 등 설계변경 요인 발생 ○ 설계 성과품의 부실로 발생된 설계 누락, 오류는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설계심의 등을 감안한 적정 설계기간 미확보 및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되며, ○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도면, GPR 탐사 등 간접 확인에 의한 설계로 	도시기반 시설본부 (전부서)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p>계변경 추가공사금액의 일정 비중을 의무적으로 사전 시민 의견수렴, 조사사업에 편성토록 하고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과정에도 공사민원 관련 안전 부의를 의무화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함.</p> <p>본 의견서는 건축부 소관 8건 설계변경공사의 경우 상세자료 및 담당관 인터뷰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토목부 소관 28건 설계변경공사 중 20건의 경우 상세자료 제출 및 인터뷰 불응으로 인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내용적 한계를 가짐</p>	<p>공사 중 지장물이 발생되고 있어 설계 시 줄파기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확인 후 설계반영 필요</p> <p>□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용역기간 확보 및 현장 조사비 반영을 통한 용역비 현실화 - 설계완료 단계에서 성과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 - 설계변경 자문회의 내용을 DB화하여 Feed Back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기능 전문성 강화 ○ 연차별 적정예산 투입으로 당초 공사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투입가능 범위에서 사업추진 - 예산담당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 부실용역업체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벌점기준에 따라 처분하여 용역업체(기술자)의 용역성과 품질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공청회) 내실화 및 관리부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공사 중 변경사항 최소화 - 적정 용역기간 확보(현장조사,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기간 등 고려) 	

61. 건설중인 자산 회계처리 미흡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건설중인 자산은 회계연도말까지 그 해당 자산이 완공되지 못할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시설물의 준공이 완료될 때에는 건설중인 자산을 정리하여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상수도 시설 등 해당분야에 맞도록 자산을 등록시켜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야 하나,

2018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일부 건설중인 자산은 납품 및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인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준공 완료 후에도 재산등록 미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관리부서	공사명	준공 및 납품완료일	지출액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2017.11.30	66,827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겸재교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2차)	2017. 1.31	56,880
도시철도 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9호선 3단계 전동차(70량) 구매	2018. 9.20	97,929

나. 시정권고

준공 완료된 건설중인 자산을 회계처리 하지 않더라도 유형 자산의 각 계정의 변화가 발생될 뿐 재무제표 총계액은 변화가 없음.

그러나,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결산의 기능에 대해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⁶⁾” 이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및 신뢰성 제고와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정확한 회계처리가 선행되어야 함.

서울시는 준공 완료된 자산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하지 말고 각 유형 자산에 맞게 회계처리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6)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p. 5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

63.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정경쟁 침해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관련하여 2017년 11월 13일 상이군경회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 받고 2018년 2월 시행계획 작성시 동 단체를 수의계약자로 지정 하였으며 2018년 5월 24일 동 단체와 213백만원에 계약을 체결 하였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동 단체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여타의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임.

나. 시정권고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입안하는 것은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 ①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 ② 유찰 등의 합당한 경우로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6. 발주공사 관련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권고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17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장폐쇄·무재산 사유로 미납부되고 있는 실정임.

공사현황

- 공 사 명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 위 치 :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일대
- 총사업비 : 328억원(토지매입비 176억원 포함)
- 공사기간 : 2016.01.25. ~ 2017.06.30.
- 지연배상금 현황 : 173백만원(2차 133백만원, 3차 39백만원)

부과고지내역

발송구분	고지일자	세목명	납부기한	부과금액	비 고
부과고지	2018-06-14	위약금 및 지체상금	2018-06-29	172,776,720	미납
독촉고지	2018-07-25	위약금 및 지체상금	2018-08-09	172,776,720	미납
체납고지	2018-09-19	위약금 및 지체상금	2018-10-04	172,776,720	미납
독촉고지	2019-01-15	위약금 및 지체상금	2019-01-30	172,776,720	미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기성금액의 지급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공사의 경우 2016.05.15. 하도급 직불합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후 발생한 공사지체상금(2017.01.25.)과 우선순위 경합이 발생하여 조기채권확보에 실패함.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동시행령 제51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계약보증금 납부시 보증보험증권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15 보증)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보증내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이행보증기관을 통한 공사지체상금 채권확보에 재차 실패한 뒤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과지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감사위원회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간접노무비 등의 승율비용 과다계상 등에 따라 과다지급된 지급금을 환수처분함에 따라 환수금채권이 발생함.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감사결과 처분 수용 및 환수금 납부 불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사유로 계약변경시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거치는 등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힘. 발주기관은 미납부된 환수금 247백만원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미납부되고 있는 실정임.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 위 치 : 성동구 응봉동 대림아파트 ~ 성수1가 삼표레미콘
- 총사업비 : 577억원
- 공사기간 : 2008.10.20. ~ 2016.09.20.
- 환수금채권 현황 : 247백만원

□ 부과고지내역

발송구분	고지일자	세목명	납부기한	부과금액	비 고
부과고지	2018-02-05	환수금	2018-02-20	246,702,000	미납
독촉고지	2018-04-09	환수금	2018-04-24	246,702,000	미납
체납고지	2018-07-31	환수금	2018-08-20	246,702,000	미납
체납고지	2018-11-08	환수금	2018-11-27	246,702,000	미납
독촉고지	2019-02-12	환수금	2019-02-26	246,702,000	미납

동 공사와 관련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의견 차이는 공사 변경 계약시 간접노무비 등의 승율비용 적용과 이에 따른 공사대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것으로서 동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성격임. 시공사가 2018.02.13. 환수금 납부촉구에 대한 거부의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의문임.

나. 시정권고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건은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삼중으로 계약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에 실패한 경우로서 관례적인 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보증하는 (일반)계약이행보증서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고 있음. 다만,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등의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고 있음.

발주기관은 하도급 직불합의서가 제출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도록 하여 지체상금 등 계약상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고함.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간접노무비 환수건은 지방계약법의 해석문제와는 무관하고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변경 계약시 간접노무비 등의 승율비용 적용 및 공사대금산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건설공사 분쟁 성격임. 게다가 계약상대자는 환수금 납부촉구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검토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수 납액 환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함.

67. 장기계속공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장기계속공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36건(공사계약금액 5억 원이상/금액변경을 110% 이상)에 대한 분석결과 당초 계약 총사업비 1조1,836억 원에 대한 누적설계변경금액이 7,456억 원에 달하여 총사업비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임. 설계변경사유별로 살펴보면 발주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요청 2,399억 원(32%), 물가변동 1,827억 원(24.5%), 민원 1,355억 원(18%), 문화재발굴 등 타부처협의 970억 원(13%), 공법·자재 변경 547억 원(7.34%), 기타 358억 원(4.8%)순임.

(단위:백만원)

공사명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설계변경 사유별 금액				
			협의발주	물가변동	민원	타부처 협의	기타
합 계	1,183,616	1,929,254	239,929	182,662	135,480	97,038	90,546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	8,204	12,213	392	325		646	2,646
전태일노동복합시설리모델링공사	2,349	2,689		20		293	27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6,523	7,267					744
제2시민청 조성사업	729	327	9				-411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10,899	12,421		212		1,146	164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2,015	2,301		40			246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14,256	17,408	806	983	144	536	246
서울소방행정타운(1단계)	23,000	32,705	6,496	1,145			2,064

9호선 3단계 송변전 (1구간)공사	5,886	5,737		139		8	-296
9호선 3단계 송변전 (1구간)공사	4,703	4,191		56		2	-578
9호선3단계 정보통신 공사(1구간)	5,786	6,644		517		337	
9호선3단계 정보통신공사(2구간)	5,609	6,402		450		341	
9호선 3단계 신호보 안설비공사	5,623	5,398		298			-503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158,496	204,643		27,661	857		15,001
율곡로 창경궁앞 도 로구조개선공사	22,235	51,152	1,728	1,940	910	6,951	11,406
남부순환로(개봉1동 사거리주변) 공사	15,446	21,057		1,772	2,086	826	927
종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 설치공사	2,191	10,872				3,902	4,779
밤고개로 확장공사	9,248	17,692		450	500	3,882	3,612
신림~봉천터널도로건 설공사(1공구)	182,864	212,886		34,652			-4,630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154,858	194,927	16,307	23,179			583
올림픽대교 남단IC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26,452	32,950		1,965	45	2,266	2,222
성산대교북단 성능개선공사	16,840	24,686	6,378	552		187	729
성산대교남단 성능개선공사	16,361	18,707		426	55	9	1,856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20,597	26,542		3,407	131	1,822	585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88,231	294,163	167,383	20,118	1,383	13,019	4,029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41,900	106,930	1,403	6,675	53,188	1,608	2,156
중랑천초앞 보행교량설치공사	5,265	8,979			1,952	762	1,000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30,533	58,995	14,519	1,538	2,571	9,322	512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9,425	13,825		721	492	2,144	1,043

여의교 확장공사	4,475	6,141		151	1,353	346	-18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공사(4공구)	90,594	198,370	11,725	12,345	40,005	30,109	13,59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공사(8공구)	136,900	239,890	12,779	38,520	30,090	11,155	10,046
노들섬특화공간 조성토목공사	4,779	6,099				909	411
동작대교연장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2,420	4,161				93	1,648
평복교~인양교 도로확장공사	42,186	53,128		2,400		3,553	4,989
구로고가 철거공사	5,738	6,756			571		437

첫째, 공공건물 건립의뢰 시 사업초기 단계부터 발주의뢰부서, 운영전문가, 설계전문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이 참여하는 통합기획 TF팀을 구성하고 발주의뢰부서가 사업의뢰 전까지 운영주체 선정을 의무화하여 운영주체는 설계용역 진행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시장방침 도기본 건축부-1629, 2016.02.10.)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TF팀 사전협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의뢰부서가 공사도중 요청하는 설계변경은 사업추진 절차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추가공사 요청에 대한 통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사업추진절차지침 미이행은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으로 이어져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임.

둘째, 장기계속공사 관련 사업계획 초기부터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계약전후 공개·비공개 주민공청회, 전문가간담회

등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이 심각한 상황임. 민원 관련 사전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절차 미흡은 민원발생 → 공법·자재변경 → 설계변경 → 공기연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총사업비 증가로 귀결되고 있음.

셋째, 설계변경심사, 계약심사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요청사항이 구분되지 않고 공사계약금액 증액변경이 가능한 사유와 불가한 사유가 혼재되어 심사되고 있어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추가공사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나. 시정권고

장기계속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총사업비 관리를 위해서는 발주의뢰부서와 발주관리부서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첫째, 국가 총사업비관리제도에 준해 발주기관 내 장기계속공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을 가시적으로 구축하고 사업계획 초기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는 사업과정 전체를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사업단계별 발주의뢰부서 또는 운영사용자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금액 감·증액과 관련 포인트 또는 페널티제

도를 검토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둘째,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심사 또는 계약심사절차 운영 시 설계변경요구주체별, 설계변경사유별 계약금액 증액분 구분경리방법을 검토하여 총사업비 증액변경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총사업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개선을 권고함.

셋째, 공사시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공정 및 공법을 분석하고 공사민원발생 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하는 등 안전·민원 관련 이슈를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 추가공사금액의 일정비중을 의무적으로 사전 시민의견수렴, 조사사업에 편성토록 하고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간담회 과정에도 공사민원 관련 안전 부의를 의무화하는 등 민원발생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함.

본 의견서는 건축부 소관 8건 설계변경공사의 경우 상세자료 및 담당관 인터뷰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토목부 소관 28건 설계변경공사 중 20건의 경우 상세자료 제출 및 인터뷰 불응으로 인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내용적 한계를 가짐.